

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

1. 선발예정인원

| 시험명 | 계 | 법원사무직렬 | 등기사무직렬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| 10명 내외 | 8명 | 2명 |

2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

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응시연령

| 시험명 | 응시연령 | 해당생년월일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고등고시 | 20세 이상 | 1996. 12. 31. 이전 출생자 |

다. 학력과 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3. 시험방법

- 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
- 제2차 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-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4. 시험과목

| 시험명 | 구분 | 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
| | 법원행정고등고시 | 법원사무 직렬 | 헌법, 민법, 형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, 한국 사(한국사능력검정시 험으로 대체) |
| 등기사무 직렬 | | 헌법, 민법, 형법, 영어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, 한국 사(한국사능력검정시 험으로 대체) | 행정법, 민법(친족·상속법 제외), 상법(총론·회사편), 민사소송법, 부동산등기법 |

5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| 시험의 종류 | 토플(TOEFL) | | | 토익 (TOEIC) | 텡스(TEPS) | 자-텔프 (G-TELP) | 플렉스 (FLEX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PBT | CBT | IBT | | | | |
| 기준 점수 | 530점 | 197점 | 71점 | 700점 | 625점 | 65점 (Level 2) | 625점 |
|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 | 352점 | 131점 | 35점 | 350점 | 375점 | 43점 (Level 2) | 375점 |

-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4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

서의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- 2014년 6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F성적은 인정됩니다(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).

다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,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6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(등급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다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성적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.

7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| 시험명 | 접수 및 취소기간 | 구분 | 시험장소 공 고 일 | 시험일 | 합격자 발표일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제34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| 접수기간 6. 3. ~ 6. 10. (취소마감일 : 6. 13.) | 제1차시험 | 7. 26.(화) | 8. 20.(토) | 9. 8.(목) |
| | | 제2차시험 | 9. 8.(목) | 10. 28.(금) ~ 10. 29.(토) | 11. 30.(수) |
| | | 제3차시험 | 11. 30.(수) | 12. 8.(목) | 12. 16.(금) |